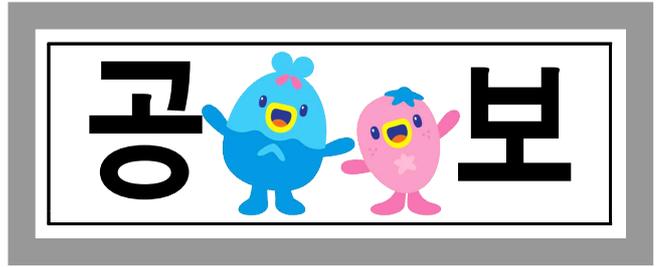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25호 2024년 4월 5일(금)

조 례

-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
-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4
-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7
-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17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91호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2.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3. 플랫폼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노무 상담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92호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속초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5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93호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속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
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EL.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우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0.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

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1.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우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12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13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OO시청, T. 012-345-6789) OO 시장</td> </tr> </table>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margin-right: 10px;">침수위선(적색) →</div>  <div style="margin-left: 10px;">문자로 침수위선 표기</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침수흔적(청색 삼각형)</div>  <div style="margin-left: 10px;">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div> </div>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OO시청, T. 012-345-6789) OO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란색과 검은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간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OO시청, T. 012-345-6789) OO 시장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yellow;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OO시청, T. 012-345-6789) OO 시장</p>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란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94호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5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95호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과 교통안전 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